7110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대관 규정

[제정 2022. 9. 21. 사규 제2022-59호]

주무부서 : 관광홍보관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센터 내 소재한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이하 “하이커”라 한다)의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 공연, 교육, 학술, 문화·예술, 국제회의, 영화 상영, 녹음, 촬영(이하 “대관 행사”라 한다) 등의 개최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이커의 시설 및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 신청자”란 대관 행사를 위해 하이커의 대관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③ “대관자”란 제1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대관 기간”이란 대관자가 공사로부터 대관을 승인받은 기간을 말하며, 행사 및 준비 등이 시작되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시설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음을 확인받는 날까지로 한다.
⑤ “대관료”란 대관 신청자 또는 대관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⑥ “자체 행사”란 공사가 자체 혹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학술, 상영, 녹음,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하이커 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시설대관

제4조(대관 · 대여 범위) ① 사장은 자체 행사 및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하이커 시설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2. 한국관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
3. 관광분야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공사 및 하이커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의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장비(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 등의 세부품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대관 종류)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및 기획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자체 행사의 일정을 확정한 후 유휴 기간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신청서를 접수받아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
3. 기획대관은 공사가 개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시, 공연 등의 기획, 제작, 시연, 상연, 상영, 녹음, 학술,

촬영 등을 진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제6조(대관 신청) ① 대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시설대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이커 그라운드 대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신청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대관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 기간, 시설 및 장소
4.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5. 행사계획서

② 대관 신청자는 정기대관은 공고에 명시된 대관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수시대관은 행사일 기준 최소 60일 전 제1항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관 신청 시 대관 기간은 행사 및 전시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관 신청자가 제1항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이커 대관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대관 신청자가 주최사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대행사인 경우, 대행사는 대관신청서 제출 전에 하이커 대관 규정의 내용을 주최사에 알려야 하며, 대행사가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주최사는 이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대행사의 이 규정 미통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대관 승인)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라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사는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사 차장급 이상 2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심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⑥ 자체 행사의 대관 및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대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제9조(대관의 우선순위) ①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사장이 행사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다음 순서에 따라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익목적에 사용
2. 관광업계의 관광진흥업무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행사로서 공사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3. 국제회의 및 행사
4. 공사 및 하이커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국내회의 및 행사
6. 기타

②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중복일 경우에는 행사 등의 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하여, 개인과 단체 간의 중복일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제10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원가 요인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되, 사장은 공공성과 행사 성격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관 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1을 원칙으로 하나, 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하이커의 장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대품의 실제 구입가격 및 운영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대관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 대하여는 대관료의 일부(50%범위 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사업무와 관련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익 목적의 행사·회의 등
2. 관광업계의 관광진흥업무와 관련되는 공익 목적의 행사·회의 등
3. 하이커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회의 등

② 제5조제3호에 의한 기획대관의 대관료는 조정·면제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정·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료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대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의 잔액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90일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대관의 승인일이 사용예정일의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사용예정일의 5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의 요청 및 상호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정한 시점에 대관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다.

③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총 대관료가 금이천만원(₩20,000,000)을 넘지 아니하는 대관은 선금과 잔금을 나누지 않고 일시납으로 완납한다.

⑤ 공사는 시설의 훼손·파손, 추가 대관료 발생, 원상복구비용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관자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 내용의 변경) ① 대관자는 승인받은 대관 행사 내용을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대관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함께 변경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료를 납부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행사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2. 4일에서 3일 전까지는 대관료의 10%

3. 2일에서 1일전까지는 대관료의 20%
4. 행사당일 취소는 대관료의 50%

② 공사는 대관기간이 일단 시작된 후에는 미사용에 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대관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대관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④ 사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거나 제16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자는 공사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4. 대관시설별 사용안내 준수
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제16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 행사
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대관 행사
3. 한국관광 및 관광산업 진흥 목적과 관련이 없는 친목 도모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의 대관 행사
4.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의 대관 행사
5. 기타 하이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행사

② 대관자가(기획대관 포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관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대관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2조에 따른 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대관자가 임의로 하이커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행사장 및 대관공간에서 과도한 폭언과 폭력이 인정될 때
7. 제15조의 대관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조(대관 행사 진행 시 유의사항) ①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는 검토 결과 대관시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특히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무대장치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하이커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물품을 대관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③ 대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물품의 판매선전 행위 등)를 할 수 없다.

④ 대관자가 대관 행사 시에 공사가 지정한 현장 지원 인력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관자가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⑤ 대관행사의 안내 및 운영 인력 및 이동 동선 안내 등 관련 교육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한 각종 광고, 홍보물(광고 형태의 배너, 현수막 등 포함)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인받지 않은 광고, 홍보물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⑦ 대관자는 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공사 및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⑧ 대관자는 행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하이커 이미지를 합성·반전처리·삭제·기타의 방법으로 건축물의 원형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공사는 대관자와 대관 행사 등에 대한 관련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 시 녹음, 회의록 작성, 관계자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촬영대관

제18조(촬영대관 신청) ① 사진이나 영상 등 촬영목적의 대관 신청자는 촬영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촬영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의 각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이커 내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대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공사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일반 개인 또는 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통해 촬영대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촬영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하이커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작품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2. 언론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3. 기타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촬영대관료) ① 제18조제3항의 경우 촬영 목적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대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촬영대관료는 별표 2를 원칙으로 하나, 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촬영대관료의 납부) ① 촬영대관료는 촬영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의 요청 및 상호협의에 의해서 대관료 납부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준수사항) 촬영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임의로 건물의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
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제23조(허가취소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허가제한사항에 해당될 때
2.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촬영 중 전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
4.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5. 기타 하이커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사전 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대관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촬영연기신청서를 촬영일 7일 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촬영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료를 납부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촬영을 취소하는 경우, 촬영 2일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나 촬영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③ 사장은 공사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제23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촬영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시설 사용 시간 등) ① 매주 월요일은 하이커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대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하이커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10:00~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연장하여 대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연시간은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⑤ 대관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주요행사 일정이 긴급히 편성되어, 사장으로부터 대관 일정의 조정을 요청받았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대관자가 일정을 연기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및 원상 복구) ① 대관자는 하이커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일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제27조(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 ①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대관 준비에서 철거기간까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 행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8조(세부시행 절차 등)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을 공사에서 결정하며 대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2022. 9. 21)

이 규정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하이커 시설대관 시간 및 요금

(단위 : 원)

시설명	대관비용(VAT포함)		대관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1시간	1일(9시간)	
케이팝라운지 (2층)	120,000	900,000	10:00~19:00
네트워킹존 (4층)	120,000	900,000	10:00~19:00
하이커라운지 (5층)	200,000	1,440,000	10:00~19:00
포켓라운지A (3층)	-	400,000	10:00~19:00
포켓라운지B (3층)	-	400,000	10:00~19:00
포켓라운지C (4층)	-	400,000	10:00~19:00
포켓라운지D (4층)	-	400,000	10:00~19:00
아트리움A (3층)	-	800,000	10:00~19:00
아트리움B (3층)	-	800,000	10:00~19:00
아트리움A+B (3층)	-	1,400,000	10:00~19:00

* 상기 시설 외,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대관 가능
* 휴관일 및 운영시간 외 대관 시 추가요금 발생

[별표 2]

하이커 촬영대관 시간 및 요금

(단위 : 원)

목 적	촬영시설	촬영비용 (층별/VAT포함)	기준시간
사진촬영 (화보,홍보사진)	1,2,4,5층	400,000	3시간 (설치 철수 포함)
동영상 촬영 (TV,인터넷)	1,2,4,5층	1,500,000	
드라마, 영화, 기타 촬영	1,2,4,5층	2,500,000	

* 상기 시설 외,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대관 가능
* 휴관일 및 운영시간 외 대관 시 추가요금 발생

[별지 제1호 서식]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시설대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자</td><td>직업 또는 단체명칭</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사 무 실 :
휴대전화 :</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우 편 :
이메일 :</td></tr>
<tr><td rowspan="9">대관신청내용</td><td rowspan="4">대관시설</td><td>행 사</td><td colspan="3">☐ 2층 케이팝라운지 ☐ 4층 네트워킹존 ☐ 5층 하이커 라운지</td></tr>
<tr><td>특별 기획전시</td><td colspan="3">☐ 3층 아트리움A ☐ 3층 아트리움B ☐ 3층 아트리움A+B</td></tr>
<tr><td>한국관광 홍보</td><td colspan="3">☐ 3층 포켓라운지A ☐ 3층 포켓라운지B
☐ 4층 포켓라운지C ☐ 4층 포켓라운지D</td></tr>
<tr><td>기 타</td><td colspan="3">☐ (　　층 :　　)</td></tr>
<tr><td colspan="2">행사명/
행사일시</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구분</td><td>행사</td><td colspan="4">☐ 소비자 이벤트(대국민) ☐ 내빈 초청 행사 ☐ 교육 및 세미나</td></tr>
<tr><td>전시</td><td colspan="4">☐ 관광콘텐츠(관광지, 상품 등) 홍보용 전시 ☐ 기타 특별 기획전시</td></tr>
<tr><td>기타</td><td colspan="4">☐ 홍보물 설치(현장인력X) ☐ 홍보물 설치 및 운영(현장인력0)</td></tr>
<tr><td colspan="2">대관기간
(준비, 행사, 철거일 포함)</td><td colspan="4">년 월 일(요일) (:) ~ 월 일(요일) (:) (총 일 시간)</td></tr>
<tr><td colspan="3">증빙발행</td><td colspan="3">☐ 세금계산서
- 사업자번호:
- 담당자 이메일/연락처: /
* 모든 증빙은 잔금일자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td></tr>
<tr><td colspan="3">대관료 입금계좌</td><td colspan="3">100-000-542461 신한은행 (한국관광공사)</td></tr>
<tr><td colspan="3">첨 부</td><td colspan="3">1. 행사계획서
2. 하이커 그라운드 대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시설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행 사 계 획 서</td></tr>
<tr><td>행사취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행사내용</td><td>구분</td><td>행 사 내 용</td><td>소요시간</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기타 참고사항</td><td colspan="4">주요 참석자, 주최자 주요 경력 등 행사 개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항 기입</td></tr>
<tr><td>별첨</td><td colspan="4">필요시 행사내용 관련 자료 별도 첨부</td></tr>
</table>

※행사 내용은 상세히 기재, 필요시 별첨 계획서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하이커 그라운드 대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의 대관 및 사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거나 한국관광공사 및 하이커 그라운드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기간을 지키고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 예약자 외 타인에게 대관을 양도할 수 없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에는 공사 및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대관 사용 중 항상 청결·청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기존 시설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6. 대관 사용 중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시설물 내외에 인화물질 반입을 금하고,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간 외 시설 내 취식은 할 수 없다.
8.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정치, 특정 종교행사, 물품 판매선전 행위 등 대관신청 사항 외 별도의 부대행사를 할 수 없다.
9. 사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대관 사용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처리 및 예방 조치 활동에 대한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구분	□ 하이커 그라운드 시설 대관 신청	□ 하이커 그라운드 촬영 신청
개인정보 항목	직업 또는 단체명칭, 성명(국/영문),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생년월일,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성명(국/영문),국적,주소,휴대폰번호,생년월일,업체(기관)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관광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시설 대관 승인	한국관광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촬영 허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 보유 · 이용됩니다. 단, 문서로 본인의 개인정보 파기요청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합니다.	
※ 귀하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한국관광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시설 대관 및 촬영 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관심의 평가서

대관 시설명 :

연번	신청자	대관행사명	행사예정일/공연 횟수	승인여부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촬 영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국 적	
	주 소			
	휴대폰번호			
현장감독자 (총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촬영목적				
촬영일시				
촬영장소				
촬영대상/내용				
촬영인원	명 *(현장 스태프 포함)*			
주연배우				
촬영장비 (소품포함)				
방영일시				
방영채널	*SNS 업로드의 경우 해당 계정 작성*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대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 관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첨부 : 1. 촬영신청공문 및 촬영세부계획(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2. 각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각 서

성 명 :
주 소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2. 촬영한 내용은 제작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상영·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내용을 영상 또는 사진 등으로 복사·제작하여 배포하지 않겠으며 저작권과 관계되는 문제는 작가와 별도로 협의하겠음
3. 관람객 및 현장 인력의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공사는 초상권이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대관자의 귀책사유임
4. 촬영 도중 전시작품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음
5.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6. 공사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자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7. 공사가 촬영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신중히 검토 수정하겠음
8.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촬영을 불허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9. 대관자의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년 월 일

서 약 인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촬 영 연 기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촬영일시	허가촬영일시	
	연기촬영일시	
연기사유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대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촬영을 연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